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12. 28.(월) / 총 7매(본문5, 참고2)	
담당 부서	녹색도시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신보미, 서기관 심인보, 주무관 이정섭 • ☎ (044) 201-3745, 3746 	
	주택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장우철, 서기관 정용연, 주무관 김유진 • ☎ (044) 201-3320, 3326 	
보 도 일 시		2020년 12월 29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9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「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」 및 「주택법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[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] 그린벨트 내 수소차·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
- [주택법]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 의무 부과,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의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 단위 지정 등

□ 앞으로 개발제한구역(Green Belt, 그린벨트 이하 GB)에서 수소차·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 의무 부과,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의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주택법」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① 「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」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

-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차·전기차 충전시설*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·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지면적은 3,300㎡ 이하로 제한

-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('14.10)하고,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('18.2), 수소충전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('18.12), 주유소·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('20.2)하였다.
- 다만,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,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.
- 이에 따라,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, 중소기업 음브즈만지원단과 협의하고,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논의(6.24)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.
-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,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- GB 내 수소차,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,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, 건축 연면적을 3,300㎡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,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화훼농가의 화훼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② 국민·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

- GB 내 불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GB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,
 - 공익사업 추진으로 GB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불법시설은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,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.
 - 이에 따라,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GB 내 도서관(2,000㎡ 이하)은 설치할 수 있으나, 휴게소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였다.
 -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GB 내 주유소·휴게소·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GB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.

- 이에 따라, 도로 개설 등 신규 수요에 맞게 주유소 등의 설치가 어렵고, 지정 당시 거주자 명의를 대여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.
- 이번 개정안은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하여, GB 내 주민의 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② 「주택법」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 의무 부과

-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,
-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.

②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의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 단위 지정

-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·군·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·면·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,
-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하였다.

③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

-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.

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 의무화

-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,


-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*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.

*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

-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·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·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
- “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은 “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,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·면·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밝혔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「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」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심인보 서기관(☎ 044-201-3745) 「주택법」은 주택정책과 정용연 서기관(☎ 044-201-332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

참고 1

GB 내 수소·전기충전시설 제도개선 현황

- GB 내 수소충전시설 허용('14.10)
 - 수소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, 부지면적은 3,300m² 이하로 제한
-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('18.2)
 -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(3,300m² 이하)를 허용하고, 여객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로 설치 허용
- 수소충전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('18.12)
 - GB 내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, 여객버스 차고지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
- 주유소·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차·수소차 충전시설 허용('20.2)
 - GB 내 주유소,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전기차 충전 시설 및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
- 수소·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(금번 개정사항)
 - GB 내 수소·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

< GB 내 수소차·전기차 제도개선 연혁 >

구 분	단독 설치	복합 설치	부대시설로 허용				
			천연가스 공급시설	여객버스 차고지	주유소	액화석유가스 (LPG) 충전소	전세버스·화물차 ·택시 차고지
수소차 충전시설	'14.10	'20.12	'18.12	'18.12	'20.2	'20.2	'21.상반기 추진예정
전기차 충전시설	'18.2	'20.12	-	'18.2	'20.2	'20.2	-

참고 2 GB 내 수소·전기충전시설 허가 현황

□ 수소연료공급시설 : 4개소

(‘20.9.30. 기준)

위치	부지면적(㎡)	허가일
부산 강서구 송정동 803-6번지	3,272	’17.7.26.
광주 광산구 복룡동 94-28	776	’17.9.6.
대전 유성구 학하동	3,283	’18.12.19.
경기 안산시 팔곡일동	3,290	’20.2.20

□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: 18개소

(‘20.9.30. 기준)

위치	부지면적(㎡)	허가일
서울 강서구 오곡동 594-5	363	2019.4.15.
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181-2 외 1필지	828	2019.9.10.
서울 강서구 개화동 567-2 외 2필지	1,820	2020.8.6.
서울 강남구 자곡동 374번지	734	2018.11.21
광주 광산구 유계동 2-22	389	2018.8.31.
대전 동구 추동	3.3	2019.9.3
경기 고양시 백석동 451-4	1,628	2018.1.8.
경기 고양시 원당동 236-2	2,857	2018.8.31.
경기 고양시 백석동 1123-13	1,819	2019.6.28.
경기 고양시 행주외동 13	1,480	2019.12.30.
경기 고양시 성사동 278	3,104	2020.03.04.
경기 고양시 대자동 63-2	2,703	2020.05.26.
경기 고양시 원당동 233-2	693	2020.06.16.
경기 고양시 원당동 179-6	2,191	2020.07.01.
경기 군포시 초막골길 216(산본동)	33	2015. 7. 28.
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469-5	522	2020.08.24.
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73-1	2711	2019.02.11.
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	2,343	2019.11.21.